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안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19 발의연월일: 2021. 5. 14.

발 의 자: 안호영·김수흥·김윤덕

노웅래 • 박상혁 • 송옥주

양정숙 • 윤미향 • 이수진(비)

임종성 · 장철민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없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 게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 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따라서 최근 일정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는 청년은 노동시장에서 구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어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취업한 사실과 무관하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 대해 서는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구직활동 기간 중 소득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2호 중 "제1항제3호에는 해당하나 같은 항 제4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"을 "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)	제7조(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	2
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동	
시장의 여건, 구직촉진수당의	
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	
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	
에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	
인정할 수 있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6조제1항제1호, 제2호 및	2
제3호 단서의 요건에 모두 해	
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조 <u>제1</u>	<u>제1</u>
항제3호에는 해당하나 같은	항제3호에 해당하는
항 제4호에는 해당하지 아니	
<u>하는</u> 사람	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